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2025. 7. 23.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목 차

Ⅰ. 특위 구성 개요 1

1. 구성 개요
2. 활동대상 기관 및 분야(사무범위)
3. 중점 활동 방향
4. 행정사항

■. 주요활동 계획 3

1. 관련부서 업무보고 청취
2. 분야별 전북 균형발전 관련 정책 점검
3. 전북 균형발전 성과제고를 위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4. 타 시·도의회 균형발전 특위 교류 협력
5. 타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동향 파악 및 대응
6. 타 시·도 우수 지역균형발전 사례 벤치마킹
7. 언론·방송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8. 특위 활동을 위한 추가 필요사항 결정

■. 세부 활동계획 5

■.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 기타 참고 자료 11

1.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특별위원회 업무추진 체계도
3.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4. 보도자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었지만, 산업·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한 핵심 분야에서 여전히 소외되며 저발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기조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북이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주체로 나서야 할 시점임.

➡ 이에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금융산업 기반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실질적인 전략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Ⅰ 특위 구성 개요

1. 구성 개요

○ 명칭 :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 위원수 : 11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 Ⅳ. 위원 명단 참조

○ 활동기간 : 2025. 6. 12. ~ 2026. 6. 11.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2. 활동대상 기관 및 분야(사무범위)

○ 기 관

- 중 앙 : 국회, 중앙부처 등
- 지 방 :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 분 야 : 균형발전 관련 공약 추진 현황, 공공기관 유치, 금융중심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조성, 광역교통체계 대응 등 지역 균형발전 및 상생을 위한 통합활동

3. 중점 활동 방향

○ 균형발전 관련 공약·정책 추진 현황

○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동향과 대상기관 현황 파악,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부처 대응 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유치활동 전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전략 수립

○ 기회발전특구 추진 현황 점검·대응

○ 기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현안 파악 및 언론 대응 등

4. 행정 사항

○ **의회사무처 부서별 협조 사항**

- **총무담당관실 :** 특위 의정활동 소요예산 및 차량 지원
- **의정홍보담당관실 :** 언론기관 홍보, 활동사진 촬영
- **의사담당관실 :** 속기 및 기록관리 지원
- **예결수석전문위원실 :** 특위활동 전반 사항 지원
 · 전담요원 : 수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1명), 직원(4명)

○ **소요 예산 : 총2,000천원**

- 회의 및 간담회 경비 : 2,000천원(의정운영공통경비)
- 활동여비 : 필요 시 배부

Ⅱ 주요 활동 계획

1. 관련부서 업무보고 청취

○ 추진기간

- (1차) 2025. ■월 ■ (2차) ■■■ ■월 * 필요시 수시

○ 보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국)

○ 참석대상 : 특위위원, 전북도 관련 실국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균형발전 관련 공약·정책 추진 현황
-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정치권 및 중앙부처 동향
- 기회발전특구 추진 현황 점검·대응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및 향후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전략 수립

2. 분야별 전북 균형발전 관련 정책 점검

○ 점검시기 : ■■■ ■월 - ■■■ ■월

○ 점검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해당 부서

○ 주요내용 : 공공기관 유치, 금융중심지 지정, 광역교통체계 대응, 특구 조성 등 분야별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 점검

3. 전북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 추진기간 : ■■■ ■월 - ■■■ ■월

○ 참석대상 : 특별위원, 전북자치도 및 시·군 관계자, 지역 균형발전 관련 각계 전문가·활동가 등

○ 주요내용 : 지역 균형발전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북 대응 전략 공동 모색 등

4. 타 시·도의회 균형발전 특위 교류 협력

○ 추진기간 : 2[redacted]월 - [redacted]월

○ 추진방법 : 타시도 균형발전 관련 특위 방문 등 교류

○ 주요내용

- 타지역 의회의 유사활동 특위 방문으로 상호 정보공유

5. 타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동향 파악 및 대응

○ 추진기간 : [redacted]월 - [redacted]월

○ 주요내용

- 추가이전 공공기관 선점을 위한 정치권과 연대 활동
- 타 지자체 유치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 등

6. 타 시·도 우수 지역균형발전 사례 벤치마킹

○ 추진기간 : [redacted]월 - [redacted]월

○ 방문기관 : 타 시·도 및 시·군·구

○ 주요내용

- 타 지자체 우수 균형발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도내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적용방안 검토 등

7. 언론·방송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 추진기간 : [redacted]월 - [redacted]월

○ 추진방법 : 언론보도, TV・라디오 방송 출연, 기고 등

○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현장 활동상황 및 향후 계획 등

8. 특위 활동을 위한 추가 필요사항 결정

○ 지방 균형발전 관련 사무 중 활동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는 특별위원회 의결로 결정

Ⅲ 세부 활동계획

일 정	활 동 내 용	비 고
2025년 6월	○ 특위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025년 7월	○ 특위 제2차 회의 - 특위 활동계획 수립·채택 - 전북도 관련 실국 업무보고 - 질의·응답 및 향후 계획 토론 등	
2025년 7월 ~ 2026년 5월	○ 균형발전 관련 지방정책 수립 촉구 건의 활동 - 국가 균형발전 관련 공약 이행, 공공기관 2차 이전, 기회발전 특구,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반영 촉구 건의 등	
	○ 지역균형발전 성과제고를 위한 토론회·세미나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따른 도 차원의 성과제고 및 추진 방향 모색 등 ○ 특위 제3차 회의(분야별 업무보고 청취) - 국가 균형발전 관련 분야별 현황 업무보고	
	○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활동 - 타 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사례 공유 ○ 유사특위 구성 타시도의회 방문 교류 협력 - 타 시·도의회 방문 교류 협력 및 관련 정보 공유	
	○ 중앙부처·정치권·타시도 균형발전 동향 파악 및 언론 홍보 등 ○ 특위 업무보고 자료요구 및 보고(수시)	
2026년 5월	○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예결수석전문위원실)	
2026년 6월	○ 특위 제4차 회의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 활동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11명, 위원회-가나다순 】

성 명		소속위원회	전화번호	비고
	서난이 위원장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주9)	휴) 010-4198-9813	
	정종복 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주3)	휴) 010-9854-0103	
	최형열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주5)	휴) 010-3659-6639	
	한정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익산4)	휴) 010-6653-2456	
	국주영은 위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주12)	휴) 010-3652-5424	
	김동구 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산2)	휴) 010-4654-5843	
	나인권 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제1)	휴) 010-6776-1931	
	김성수 위원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창1)	휴) 010-3684-7976	
	이명연 위원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주10)	휴) 010-2022-9934	
	장연국 위원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휴) 010-6242-7100	
	윤수봉 위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완주1)	휴) 010-6280-9509	

Ⅴ 기타 참고자료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8

발의연월일 : 2024. 9. .
발 의 자 : 서난이 의원
찬 성 자 : 김동구 · 염영선 · 진형석
한정수 · 이수진 · 권요안
김성수 의원(7명)

1. 주 문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보다 확대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따라 도의 높아진 경쟁력을 기대한 것과는 달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각종 산업과 교통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들에서 배제되며 소외된 지역의 저발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202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배제되면서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개정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민생과 경제를 살릴 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등 경쟁력있는 공공기관의 2차 이전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필요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인 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명　　칭 :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1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 대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사무범위 : 공공기관 유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산업 육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 점검·대응, 국토교통부의 지방국지도 구축 관련 사무일체

2. 제안이유

가.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책 평가 용역'이 연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용역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

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고자 함.

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촉구하는 것이 교통 오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

라.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 및 대응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방국지도 관련 사업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함.

3. 활동계획

○ 공공기관 2차 이전 동향 파악 및 관련 부처 대응 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유치활동 전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촉구

○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 점검·대응

○ 국토교통부의 지방국지도 구축 관련 활동 전개

○ 기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현안 파악 및 언론 대응 등

4. 참고사항

가. 세부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 : 별도 수립 시행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64조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부

연번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발의, 찬성)
1	서난이	서난이	발의
2	김 동구		찬성
3	염 영선		〃
4	진 형생		〃
5	한 병도		〃
6	이 수진	이 수진	〃
7	권 은희		〃
8	강 성주	강 성주	〃
9			
10			
11			
12			
13			
14			
15			

2. 특별위원회 업무추진 체계도

	【 주요 내용 】	【 관련 법규 】
위원회 구성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 본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부의·의결 ※ 상설 특별위원회(2개) - 예결특위 : 11명 이내(임기 1년) - 윤리특위 : 9명 이내(임기 1년)	▸ 지방자치법 제64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위원 선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 추천 → 본회의]** ○ **(예결·윤리 특위)**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및 상임위 의원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 **(기타 특위)**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 비교섭단체 의원은 의장 추천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위원회 호선 → 본회의]** ○ **(위원장)** 위원회 호선 ⇒ 본회의 보고 ○ **(부위원장)**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 위원회 호선 ⇒ 본회의 보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3조
결원 시 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결원 선임여부 결정 → 본회의]** ○ **(결원 선임여부 결정)** 결원위원의 남은 임기기간 중 특위의 주요 활동계획을 고려 특위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의장이 선임여부 결정 ○ **(선임 결정시)** 결원위원 소속 교섭단체 및 상임위를 고려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날까지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부위원장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요청하여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 제2항에 따른다.

제1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 보도자료

새전북신문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002면 종합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새출발

전북자치도의회가 16일 '전북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위원들을 선임하고 새출발했다.

특위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서난이(전주9), 부위원장은 정종복(전주3)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은 최형열(전주5), 한정수(익산4), 국주영은(전주12), 김동구(군산2), 나인권(김제1), 김성수(고창1), 이명연(전주10), 장연국(비례), 윤수봉(완주1). 임기는 1년이다.

특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유치, 전북혁신도시 일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대응과 특구 조성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닌 실천 주체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실질적이면서 선제적인 대응 또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